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97 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7일

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 규정이라 볼 수 없어 「지방재정법」에 반하는 '기술혁신사업'과 '기술지도사업'에 대한 출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가. 시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안 제17조 제1항)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7조(산학연 공동기	제17조(산학연 공동기	제17조(산학연 공동기
술혁신사업에 대한 출	술혁신사업에 대한 출	술혁신사업에 대한 출
<u>연</u>) ① 시장은 중소기	연 등) ①	연 등) ①
업의 기술혁신을 촉		
진하기 위하여 <u>「중</u>		「 <u>중</u>
소기업기술혁신 촉진	소기업기술혁신 촉진	소기업기술정보진흥
법」의 규정에 의하	법」제11조 규정에	원이 수행하는 「중
여 학교·기관 및 단	<u>따라 학교·기관 및</u>	소기업기술혁신 촉진
체가 중소기업자와	단체가 중소기업자와	법」 제20조 제4항
공동으로 수행하는	공동으로 수행하는	<u>각 호의 사업에</u> 금전
기술혁신사업과 중소	기술혁신사업과 중소	또는 기타 시의 재산
기업에 대하여 실시	기업에 대하여 실시	을 출연 또는 보조할
하는 기술지도사업에	하는 기술지도사업,	수 있다.
금전 또는 기타 시의	동법 제20조의 규정	
재산을 출연할 수 있	에 의해 중소기업기	
다.	술정보진흥원이 수행	
	하는 동법 제20조 제	
	4항 각 호의 사업에	
	금전 또는 기타 시의	
	재산을 출연 또는 보	
	조할 수 있다.	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 결한다

제20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- 3.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 : 시 경제기획관,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

- 2. 위촉직 위원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·언론인·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 - 1.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2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
 - 3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-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 건의 심의·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 조문대비표>

혀행 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 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에 대한 출연) ① 시장은 중소기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 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 규정에 의하여 학교·기관 및 단 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 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 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 을 출연할 수 있다. 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

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 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 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 하다

개정안

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 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 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

(2) -----

-----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 우에는 -----

<신설> 제20조의2(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 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산학연협력 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 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 리에 관한 사항
- 2.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- 3.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

- 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 항
- 4.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 의신청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1. 당연직 위원:시 경제기획관,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
- 2. 위촉직 위원:서울특별시의 회 의원 및 기업인·언론인· 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 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소집한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
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 - 1.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2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기관에 소속된 경우
 - 3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-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회피할수 있다.
-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.